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하 안 전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456호, 2020. 6. 9. 공포 및 2020. 12. 10. 시행) 됨에 따라,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,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)
-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,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
- 나.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·범위 신설(안 제35조의2)
-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, 산업단지 조성, 도로·철도 건설,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

다. 전담기구 업무인 “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”을 위탁업무 범위에서
삭제(안 제43조제2항)

- “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”은 전담기구의 업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
관이 지정·고시하는 다른 위탁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전담기구의 지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
2.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
3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
4. 법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
5.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·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
6.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,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

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

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중 “지하공간통합지도”를 각각 “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) 법 제4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”이란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,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1. 도시의 개발사업
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
3. 에너지 개발사업
4. 항만의 건설사업
5. 도로의 건설사업
6. 수자원의 개발사업
7. 철도(도시철도를 포함한다)의 건설사업
8. 공항의 건설사업
9. 관광단지의 개발사업
10. 건축물 설치사업
11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
제4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

호,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3조의2(전담기구의 지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</u> <u>2.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</u> <u>3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</u> <u>4. 법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</u> <u>5.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·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</u> <u>6.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</u>

	<u>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,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</u>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35조(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) ①	제35조(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) ①
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(이하 “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략) 7. <u>지하공간통합지도</u>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8. <u>지하공간통합지도</u> 관련 교육·홍보 및 국제협력 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</u> ----- ----- ----- 8. <u>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</u> 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35조의2(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</u>

	용 사업) 법 제4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”이란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,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 1. 도시의 개발사업 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. 에너지 개발사업 4. 항만의 건설사업 5. 도로의 건설사업 6. 수자원의 개발사업 7. 철도(도시철도를 포함한다)의 건설사업 8. 공항의 건설사업 9.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. 건축물 설치사업 11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제4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	제4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	② ----- ----- -----

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 1. (생 략) <u>2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</u> <u>공간통합지도의 제작</u> <u>3. · 4.</u> (생 략) <u>5.</u>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	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2. · 3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<u>4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74